

금호타이어 주식회사

감사위원회 운영규정

제 1 장 총칙

제 1 조 (목적)

본 규정은 금호타이어 주식회사 감사위원회(이하 “위원회” 라고 한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적용범위)

위원회에 관한 사항은 법령, 정관 또는 이사회 규정에서 정하여진 것 이외에는 본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 3 조 (직무와 권한)

- ① 위원회는 회사의 회계와 업무를 감사하며, 이를 위하여 언제든지 이사에 대하여 영업에 관한 보고를 요구하거나 회사의 업무와 재산 상태를 조사할 수 있다.
- ② 위원회는 회의의 목적 사항과 소집의 이유를 기재한 서면을 이사회에 제출하여 임시주주총회의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
- ③ 위원회는 그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상법상 자회사에 대해 영업의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회사가 지체 없이 보고를 하지 아니할 때 또는 그 보고의 내용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 자회사의 업무와 재산 상태를 조사할 수 있다.
- ④ 위원회는 법령 및 정관에 정하여진 사항, 이사회로부터 위임 받은 사항을 의결한다.

제 2 장 구성 및 임기

제 4 조 (구성)

- ① 위원회는 상법 제 415 조의 2 제 2 항에 따라 3 인 이상의 이사로 구성하며, 위원의 3 분의 2 이상은 사외이사이어야 한다. 위원 중 1 인 이상은 상법 제 542 조의 11 제 2 항 제 1 호에서 정하는 회계 또는 재무전문가로 하여야 하고, 사외이사가 아닌 위원은 상법 제 542 조의 11 제 3 항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 ② 위원이 사임·사망 등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회의 구성요건이 상법에서 규정한 조건에 미달하게 된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후 최초로 소집되는 주주총회에서 위원회의 구성요건에 충족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 5 조 (임기)

- ①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법령, 정관 또는 주주총회에서 달리 정하지 않는 한, 당해 위원의 이사 임기 만료시점까지로 한다. 법령 또는 정관에 의해 이사의 임기가 연장되는 경우에는 위원의 임기도 연장된 이사의 임기에 따른다.
- ② 위원회 위원은 연임할 수 있다.
- ③ 위원이 법령 및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의 직에서 해임된 경우에는 위원의 직에서 당연히 해임된다.

제 6 조 (위원장)

- ① 위원회는 그 결의로 사외이사인 위원 중에서 위원회를 대표하는 위원장을 선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인의 위원이 공동으로 위원회를 대표할 것을 정할 수 있다.
- ② 위원장의 유고로 인해 그 직무를 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연장자 순으로 그 직무를 한시적으로 대행한다.

제 3 장 회의 및 운영

제 7 조 (회의)

- ① 위원회는 정기위원회와 임시위원회로 한다.
- ② 정기위원회는 분기별 1 회로 하되, 위원회가 정하는 일정한 날에 한다.

- ③ 임시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제 8 조 (소집권자)

- ①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그러나, 위원장의 유고 등으로 인하여 직무를 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제 6 조 2 항에 정한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 ② 각 위원은 위원장에게 의안과 그 사유를 명시하여 위원회 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 위원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위원회를 소집하지 아니하는 경우 위원회의 소집을 요구한 위원이 직접 소집할 수 있다.

제 9 조 (소집절차)

- ① 위원회 소집은 회일을 정하고 회일 2 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장소 및 안건을 문서 또는 구두로 통고하여야 한다.
- ② 위원 전원의 동의를 있을 경우 제 1 항의 절차 없이 회의를 열 수 있다.

제 10 조 (의사의 진행 및 결의방법)

-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의사를 진행하고, 회의의 질서를 유지한다.
- ② 위원회의 결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한다.
- ③ 위원회의 결의에 관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 ④ 제 3 항의 규정에 의하여 행사할 수 없는 의결권의 수는 출석위원의 의결권의 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 ⑤ 상법 제 393 조의 2 의 제 4 항에 따라 위원회는 결의된 사항을 각 이사에게 회의 후 10 일 이내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 11 조 (부의사항)

위원회에 부의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 ①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 ② 감사에 관한 사항
 - 가. 상법 제 412 조의 2 소정의 이사의 보고에 따른 조치
 - 나. 주식회사 외부감사에 따른 법률 제 10 조 소정의 외부감사인의 통보에 따른 조치
 - 다. 자회사의 조사에 관한 사항

- ③ 외부감사인 선정, 변경 및 해임
- ④ 감사보고서의 작성, 제출 및 주주총회에서 의견 진술에 관한 사항
- ⑤ 기타 법령에 정하거나 정관 및 이사회가 위임한 사항 및 이의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 12 조 (이사회 보고)

이사회에 보고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 ① 이사회에서 위원회에 위임한 사항의 처리결과
- ② 이사가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한 행위를 하거나 그 행위를 할 염려가 있는 경우 이에 관한 사항
- ③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평가결과 및 통제도의 관리나 운영에 대한 시정 의견
- ④ 기타 위원회 위원들이 이사회에 보고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한 사항

제 13 조 (의사록)

- ① 위원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한다.
- ② 의사록에 의사의 안건, 경과요령, 그 결과, 반대하는 자와 반대하는 사유를 기재하고 출석한 위원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하여야 한다.

제 14 조 (감사록)

- ① 위원회는 감사를 실시한 경우에 해당 감사에 관하여 감사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 ② 전항의 감사록은 감사의 실시요령과 그 결과를 기재하고 감사를 실시한 위원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한 후, 위원회가 의결하여야 한다.

제 15 조 (전문가의 조력)

- ①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경영진, 재무담당임원, 내부감사 부서의 장 및 외부감사인 등을 회의에 참석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 ② 위원회는 회사의 비용으로 전문가의 조력을 구할 수 있다.

제 16 조 (외부감사인)

외부감사인의 선정, 변경 및 해임, 외부감사인의 의견진술권 등 외부감사인 운영에 대해서는 ‘주식회사의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및 그 하위규정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제 16 조 (사무지원)

회사의 감사부서 혹은 회계부서는 위원회의 사무를 담당하며, 위원장의 지시에 따라 소집통지, 부의안건의 정리 및 배포, 의사록 작성 및 부의안건의 사후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제 18 조 (규정의 개정)

본 규정의 개정은 이사회회의 결의에 의한다.

부 칙

1. 시행일
본 규정은 2007년 5월 5일로부터 시행한다.
1. 시행일
본 규정은 2009년 3월 6일로부터 시행한다.
1. 시행일
본 규정은 2018년 11월 13일로부터 시행한다.
1. 시행일
본 규정은 2019년 3월 14일로부터 시행한다.